

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(변경)

(의안번호 제3033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11. 14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: 2025. 11. 14.
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5. 11. 26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관광진흥과장 김영국)

가. 제안이유

제302회 고성군의회(제1차 정례회) 2025. 6. 11. 원안 가결된 「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」과 관련하여, 위탁기간 및 소요예산 변경에 따라 의회의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함

나. 위탁근거

- 1) 「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(위탁운영)
- 2)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, 제5조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, 제6조(군의회 동의 및 보고)

다. 주요내용

1) 위탁사무명: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

2) 위탁대상: 고성군 해양치유센터

가) 위치: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(자란도) 108번지 일원

나) 연면적: 6,080.95㎡(대지면적 19,385.00㎡)

다) 시설규모: 1개동(지하 1층, 지상 3층)

- 지하 1층: 기계실, 전기실

- 1층: 세탁실, 검사실, 상담실, 탈의실, 샤워실, 1종근린생활시설, 린넨창고, 식당 등

- 2층: 치유실(숙박), 요가/명상실, 마인드풀, 탄산풀, 개별치유실, 다목적풀, 패각찜질실, 소금찜질실 등
- 3층: 치유실(숙박), 사무실, 회의실, 공유오피스, 피트니스, 다목적홀, 강의실 등

라) 위치도



3) 위탁기간: 2년 11개월(2026. 2. ~ 2028. 12.)(변경)

- (당초)위탁일로부터 3년 → (변경)2년 11개월
- 변경사유: 위탁운영비 정산 등의 회계처리 편의성 및 정확도 제고

4) 위탁방법: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

5) 위탁사무 내용: 해양치유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

-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·개발 지원
- 해양치유센터 시설 내·외부 유지 관리 지원
- 주요 치유시설, 숙박시설, 식당, 공유오피스, 편의시설 등의 운영

6)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해양치유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산업 형태로서 경영·서비스 분야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됨
- 보직순환을 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치유산업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사업수익 및 센터 활성화 등의 안정적 운영·관리가 어려움

- 해양치유센터의 운영은 전문 기업·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시행하되, 시설물 관리는 고성군, 그 외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시행
- 운영 개시 후 안정적 운영관리가 확인되는 경우 단독(공공 또는 민간) 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·관리

7) 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(변경)

가) 변경내역

구분	당초	변경	증감액
소요예산	0천원	837,250천원	837,250천 원
정산방법	수익과 상계 처리 (비용 미발생)	상계처리 원칙, 최초 1년간 손실액 조건부 보전	

- 변경사유: 초기 운영 단계임을 감안하여 최초 1년간 적자 발생 시 타당성 여부 검토 후 일부 금액(837백만 원 이내) 예산 지원

나) 위탁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: 천 원)

연도	2026년	2027년	2028년	비고
소요예산	837,250	-	-	최초 1년 지원

- 산출내역

(단위: 천 원)

위탁운영비(a)	예상매출(b)	추정 적자액(a-b)	비고
2,685,250 (군 예산 편성분 제외)	1,848,000 (가동률27%)	837,250	◦ (완도군)사례(23.11~25.1) 매출 2,157백만원(14개월) 평균매출 1,848백만원/년

다) 산출근거: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용역(2025)

- 운영원가 상세내역(2026년 소요예산 기준)

구분		금액(원)	비고
총계(운영원가+부가가치세)		3,186,412,511	
인건비		1,176,776,683	▲ 25명 기준
운영비	복리후생비	149,900,000	▲ 25명 기준
	보험료	112,754,145	
	교육훈련비	36,377,333	
	통신비, 세금과공과	29,925,842	
	임차료, 유류비	200,356,400	▲ 선박, 차량(1톤 트럭) 등 임차비
	수리수선비	25,958,151	▲ 소규모 수선비
	소모품비	230,365,843	▲ 타올, 래쉬가드, 수영모 등 소모품 구입
	사무용품비	6,022,152	
	홍보비	30,128,386	▲ 홍보물품 구입 및 홍보업무 추진
	기타경비	174,231,455	▲ 카드가맹점 수수료, 세탁 용역 등
순원가(인건비+운영비)		2,172,796,390	
일반관리비	5%	108,639,820	▲ 순원가의 5%
이윤	7%	159,700,535	▲ 순원가 + 일반관리비의 7%
운영원가(순원가+일반관리비+이윤)		2,441,136,744	
부가가치세	10%	244,113,674	▲ 운영원가의 10%
소계(운영원가+부가가치세)		2,685,250,418	
2026 당초예산 편성	지급수수료(유지보수)	41,094,560	※ 2026년 당초 예산 편성요구 내역 ▲ 초기 전문인력 기술교육(3개월): 1억원 ▲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(8개월분): 3억원
	초기교육비	100,000,000	
	전력비	290,765,362	
	수도광열비	69,302,171	
	소계	501,162,093	

※ 가동률에 따른 운영수지

(단위: 천 원)

가동률	테라피 이용수입		롱텀케어센터		연간매출 (a)	연간비용 (b)	운영수지 (a-b)	비고
	자유의바다	고성의바다	2인실	4인실				
100%	1,781,200	1,781,200	2,690,050	489,100	6,741,550	3,186,413	3,555,137	
47.3%	841,889	841,889	1,013,535	489,100	3,186,413	3,186,413	손익분기점	
27.4%	488,264	488,264	382,372	489,100	1,848,000	3,186,413	△1,338,413	목표액
20%	356,240	356,240	146,730	489,100	1,348,310	3,186,413	△1,838,103	

라) 위탁의 적정성 검토: 적정

8) 추진일정

가) 2025. 12.: 해양치유센터 운영 위탁 군의회 변경 동의

나) 2025. 12. ~ 2026. 1.: 해양치유센터 운영 위탁 사업자 공모

다) 2026. 2.: 사업자 확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

라) 2026. 5. ~ 8.: 시범운영

9)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: 적정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○ 고성군 해양치유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동의를 득하였으나 민간위탁 예산 20% 이상 반영 등 중요내용 변경으로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6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.

○ 주요 내용 검토(변경사항)

- 의회(변경)요청: 민간위탁 예산의 20% 이상 증액(중요내용), 위탁기간 변경

구분	당초 승인 사항 (제302회 군의회)	제304회 군의회 제출안(보류)	변경 제출 사항 (제306회 군의회)	중요 변경 사유
민간위탁 금액 (3년간 소요예산)		9,543,047천 원	837,250천 원 (1년)	
정산 방법	수익과 상계 처리 (비용 미발생)	운영원가 지급 후 이용료 수입세입처리	상계 처리 원칙(최초 1년간 손실액 조건부 보전)	소요 예산산출 (정산 방법 변경)
위탁기간	2026. 4. ~ 2029. 3. (3년간)	2026. 1. ~ 2028. 12. (3년간)	2026. 2. ~ 2028. 12. (2년 11개월)	회계마감일 기준 위탁운영비 결산 등

○ 본 동의안은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기간 변경, 민간위탁사무 사업예산 20% 이상 변경과 함께 정산방법 변경, 2026년 소요 예산(민간위탁금) 및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출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 군의회의 변경 동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됨.

다만,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상황에 충분한 사전검토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최소화하여 사업의 효율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11. 26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